##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

(제8조제2항 관련)

지 원 대 상	선 정 요 건	융 자 범 위
시 전 내 경	신 경 표 신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1. 제조업 영위자	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	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2. 전략산업 영위자	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전략산업 영위자	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 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2 또는 최근 6개 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3.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	서울특별시(자치구 포함)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	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 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 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4.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	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	
5. 서울형산업 영위자	패션·디자인·애니메이션·소프트웨어·문화 관광상품산업, 벤처기업, 국제회의기획업 영위 자	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/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6. 창업기업	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	
7. 여성기업	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	
8. 장애인기업	「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」제2조에 따른 장 애인 기업	
9. 중소무역업체	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% 이상인 업체	.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 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 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10.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	중소기업협동조합,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 체, 투자기관, 출연기관), 법인(공익법인, 비영 리법인), 중소기업 관련 단체, 3개 이상의 중 소기업 규합체	
11. 유통업, 건설업 영위자	。도·소매 및 상품중개업 。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	1회전 소요 경영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 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6 또는 최근 2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 액)

지 원 대 상	선 정 요 건	융 자 범 위
12. "Hi Seoul" 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	"Hi Seoul"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자 또는 "Hi Seoul" 브랜드 인증사업 참여자	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/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13.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자	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「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 송사업,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 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	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 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 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14. 산업개발진흥지구 ·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	산업개발진흥지구·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 업종 영위자	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/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